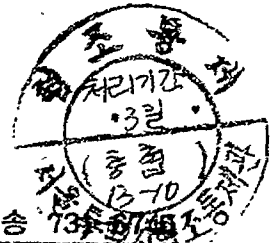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731-6346 / 전송 731-63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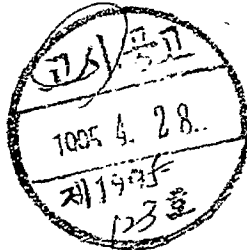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시설 58412-358

시행일자 1995. 4. 26

(경유) (제 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추
부시장	전결	
도시계획국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법무담당관심사필
시설계획과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협조통제관
기안	시설계획1계장 <i>[Handwritten]</i> 가로계획1계장 <i>[Handwritten]</i>	협조

제목 도시계획 (용도지역, 시설)결정 및 변경결정

000141



1. 청소사업본부 시계 67503-146('95.4.3)호 및 노원구 도정 58412-2228('94.12.2)호, 강남구 도정 58407-3172('94.11.2)호, 구로구 도정 58412-2050('94.12.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관할구청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입안하고 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한 도시계획 용도지역(자연녹지→일반주거)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시장, 공용의 청사, 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75회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('95.3.3)에서 의견 청취하였고, 95년도 제4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(95.4.11)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의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코져 합니다.

첨부 : 고시(안) 및 도면 각 1부. 끝.

(제 2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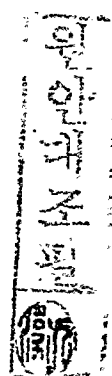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제목 :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결정 및 변경결정 보고

1.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용도지역, 시설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

# 서울특별시

(제 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게제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제 의뢰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(응도지역,시설)결정 및 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2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도시계획(응도지역,시설)결정 및 변경결정 통보

1. 청소사업본부 시계67503-146('95.4.3)호 및 노원구 도정58410-2224호 ('94.12.2), 강남구 도정 58407-3172('94.11.2)호, 구로구 도정58412-2050 ('94.12.9)호와 관련임.

2. 위호로 요청한 우리시 도시계획(응도지역,시설)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3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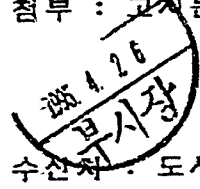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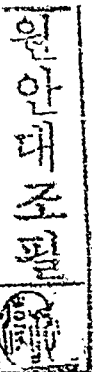
3. 해당구청장은 결정도서 사본을 관련부서 통보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,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및 고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.

4.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일원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수서IC 차량동선을 고려한 교통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차량 진출입 및 주민접근로 확보를 검토하여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도시개발과장, 도로계획과장, 연료과장, 청소사업본부장 (시설계획부장), 노원구청장, 강남구청장, 구로구청장, (도시정비과장).



# 고 시 (안)

도시계획 1995. 4. 27. 119호	담당자	김영남	부담관	김영남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5 - 호

##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변경결정 및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강남구, 노원구, 구로구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4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### 가.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(단위 : m<sup>2</sup>)

구 분	기 정	변 경	증 감	비 고
일반주거지역	292,374,311	292,534,314	(증) 160,003	강남구 일원동4-5일대 (90,196m <sup>2</sup> ), 노원구 상계동772일대 (69,807m <sup>2</sup> ) 용도지역 변경
자연녹지지역	250,065,120	249,905,117	(감) 160,003	

※ 기타지역 : 변경 없음.

### 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

#### 1) 폐기물처리시설, 시장, 공용의 청사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기정	폐기물처리시설	노원구 상계동772번지일대	69,807.40	
변경	상 등	상 등	66,193.40	(감) 3,614m <sup>2</sup>
기정	시 장	구로구 구로동 101번지일대	1,737.70	
변경	상 등	상 등	0	폐지
	공용의 청사	구로구 구로동 101외1필지 일대	2,270.50	구로구의회의 사당

안 대 조 필

2) 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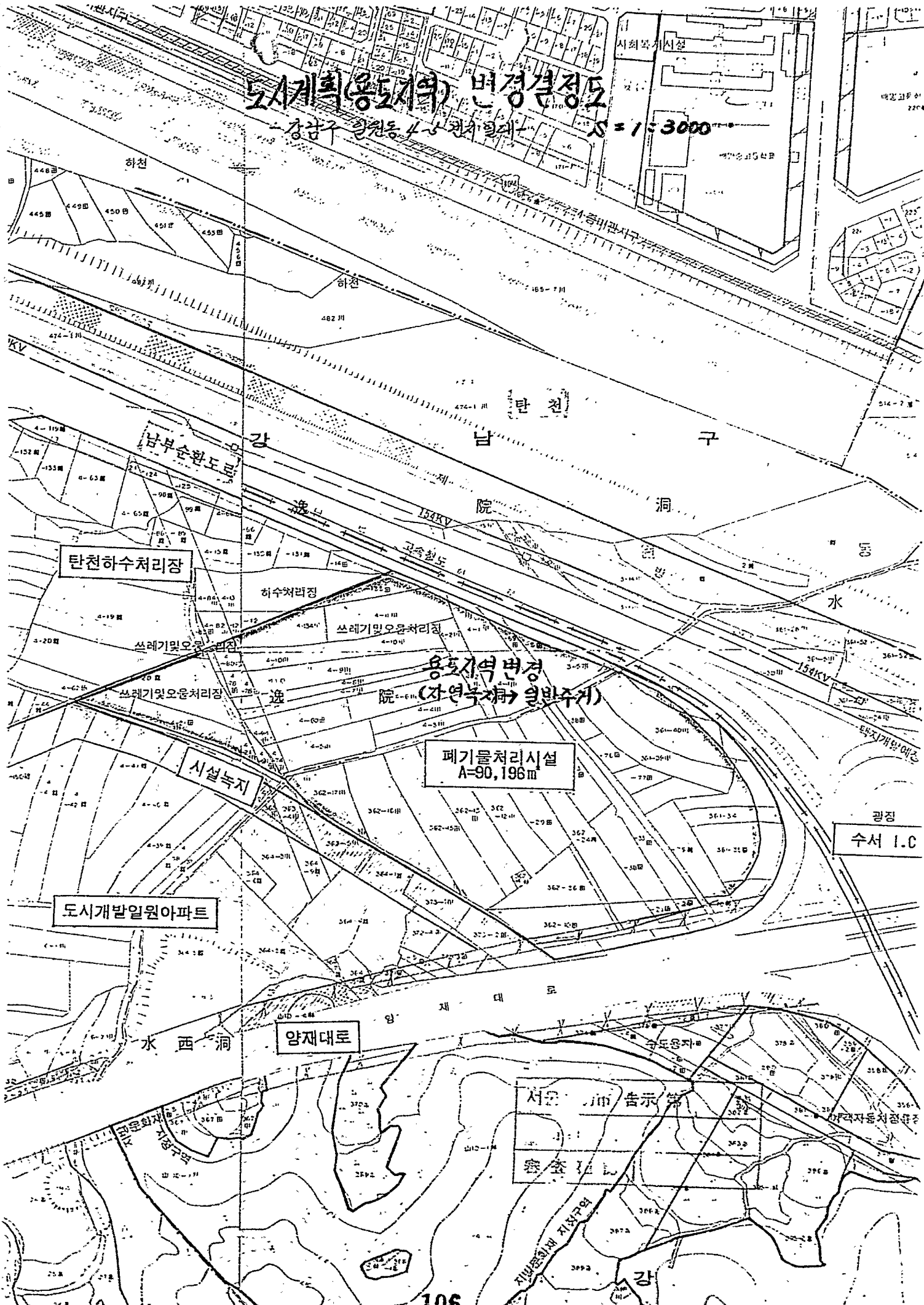
구분	등급	류별	시설의 세분	번호	폭원 (M)	연 장 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2	일반 도로	86	21~ 30	18,805	성수1가 (용비교)	상계동 1211	노원구 상계 동772번지 일부구간폭 원 확폭 B=0~5M L=90 M
변경	〃	2	〃	86	21~ 30	18,805	〃	〃	

인  
대  
조  
필  
〃

0710  
부시장

# 도시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도

강남구 일원동 4-5번지 일대 S = 1:3000



# 도시계획(용도지역·시설)결정및변경결공도

2차 상계동 772번지필지

방안 3호  
1:3000

동부간선도로

근린공원

한일도시가스

중랑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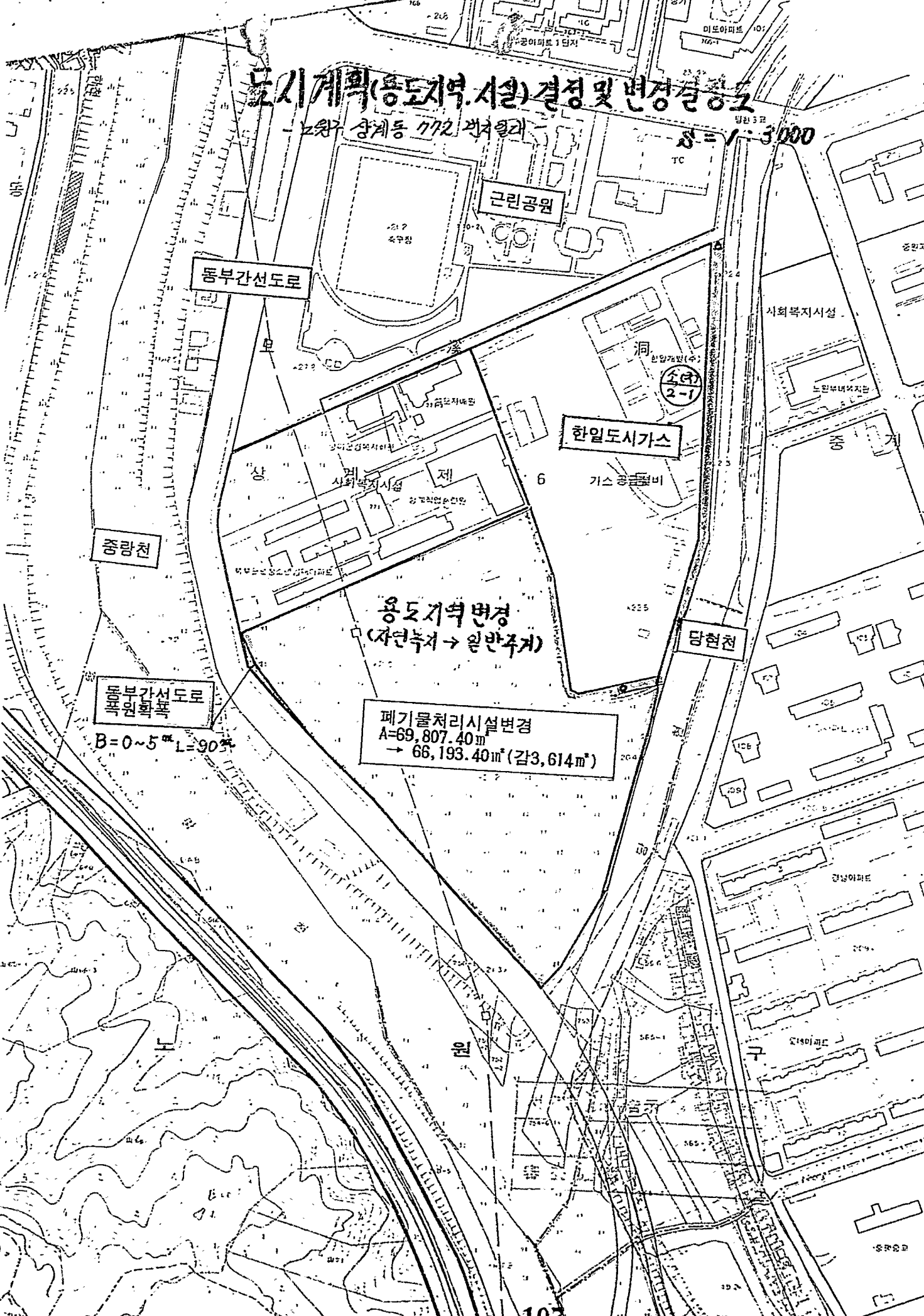
용도지역변경  
(자연녹지 → 일반주거)

당현천

동부간선도로  
폭원확폭

B=0~5m L=90m

폐기물처리시설변경  
A=69,807.40m<sup>2</sup>  
→ 66,193.40m<sup>2</sup> (감3,614m<sup>2</sup>)



#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도

100-1 3000

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 
시장(폐지) A=1,737.70㎡→0㎡  
공용의정사(결정) A=2,270.50㎡

108

Handwritten signature or mark